

# 업 무 협 약 서

십대여성인권센터와 서울시립일시청소년쉼터(이동형,동남) (이하 “양기관” 이라 한다.)는 위기 청소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자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조 (목적) 본 협약은 위기 청소년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의 공동수행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범위 및 의무) 양 기관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이익이 되는 사업방향으로 공동협력을 모색한다. 이를 위해 효과적인 업무협력과 홍보에 대한 방안을 상호 협의하에 추진한다.

제 3조 (협약내용) 양 기관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협력한다.

-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성착취 청소년 피해지원 및 성인권 향상 활동
- 프로그램 상호교류 및 지원
- 기타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상호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

제 4조 (비밀준수) 양 기관은 상호 협력 또는 교류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5조 (협력기간) 본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, 그 협력내용이 성실하게 이행되고 양 기관 이의가 없는 경우 매 1년간 그 효력이 자동으로 연장된다. 또한 양 기관은 협약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6조 (기타) 협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거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이 있을 시, 양 기관이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.

2025년 12월 19일

십대여성인권센터

대표

조진경



서울시립일시청소년쉼터

(이동형, 동남)

소장

김범구

